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골재채취 허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59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제221295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골재채취 허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등)	3

I.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제221295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15.

다. 회 부 일 : 2025. 9.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달리 골재채취 예정지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검토의견

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골재채취 허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생략) <u><신설></u>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이가 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 -----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골재채취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행위¹⁾를 말하며, 「골재채취법」(이하 “현행법”이라 함)과 「환경영향평가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라 함),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은 골재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동 행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은 제9조²⁾에서는 토석·모래·자갈 등의

1)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채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6조³⁾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승인등 필요 여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각각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⁴⁾는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7조⁵⁾는 승인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

기관장등⁶⁾으로 하여금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해양공간계획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⁷⁾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골재의 채취에 관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⁸⁾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골재

령령으로 정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해야 한다.

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채취법」 제21조의29)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조10)는 「골재채취법」 제22조11)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12)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9) 「골재채취법」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11)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로 하여금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¹³⁾는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현행법 제34조제2항¹⁴⁾은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

12) 「골재채취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1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 요청) ①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 및 처분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골재채취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이가 된 것으로 본다.

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골재채취 예정지'¹⁵⁾ 및 '골재채취단지'¹⁶⁾의 지정, 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행정절차의 비효율과 시간 및 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시 주요 행정절차를 ① 바다골재 및 ②하천골재¹⁷⁾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p.11. 표 참고),

15) 「골재채취법」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6) 「골재채취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17)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 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먼저, ①바다골재는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시에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¹⁸⁾와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바다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 시에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바다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34조제2항 후단¹⁹⁾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보게 되어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바다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함.

다음, ②하천골재는 ‘하천골재채취예정지’ 및 ‘하천골재채취단지’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하천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함.

1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9) 「골재채취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 골재채취 허가 시
주요 행정절차(협의 사항) 비교 】**

구분	바다골재		하천골재	
	골재채취 예정지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 예정지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단지 지정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양공간계획법」 제15조 ²⁰⁾)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양공간계획법」 제15조)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 ²¹⁾)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 평가법」 제9조 ²²⁾)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포함) (「골재채취법」 제34조제2항 전단 ²³⁾ , 「해양이용영향 평가법」 제13조 및 제19조)		
골재채취 허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협의 (「해양이용영향 평가법」 제13조 및 제19조 ²⁴⁾)	- (「골재채취법」 제34조제2항 후단 ²⁵⁾)	-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재구성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2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 시기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u>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u>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u>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u>

2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3) 「골재채취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이가 된 것으로 본다.

2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제19조(협의 요청) ①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경우에는 바다골재채취단지, 하천골재채취예정지, 하천골재채취단지의 경우와 달리 지정 이후에 골재채취허가 시 추가적인 행정절차(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협의)를 거쳐야 함으로써 실제 바다골재채취 및 공급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바다골재채취예정지에 대해서도 그 지정 및 채취허가 절차를 바다골재채취단지, 하천골재채취예정지, 하천골재채취단지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후 바다골재채취 허가 시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협의회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골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상 해양이용협의회와 해양이용영향평가는 개발행위로 인한 해양영향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그 목적이 동일하나, 바다골재채취예정지는 해양이용협의회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모두 적용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바,

25) 「골재채취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과 같이 바다골재채취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